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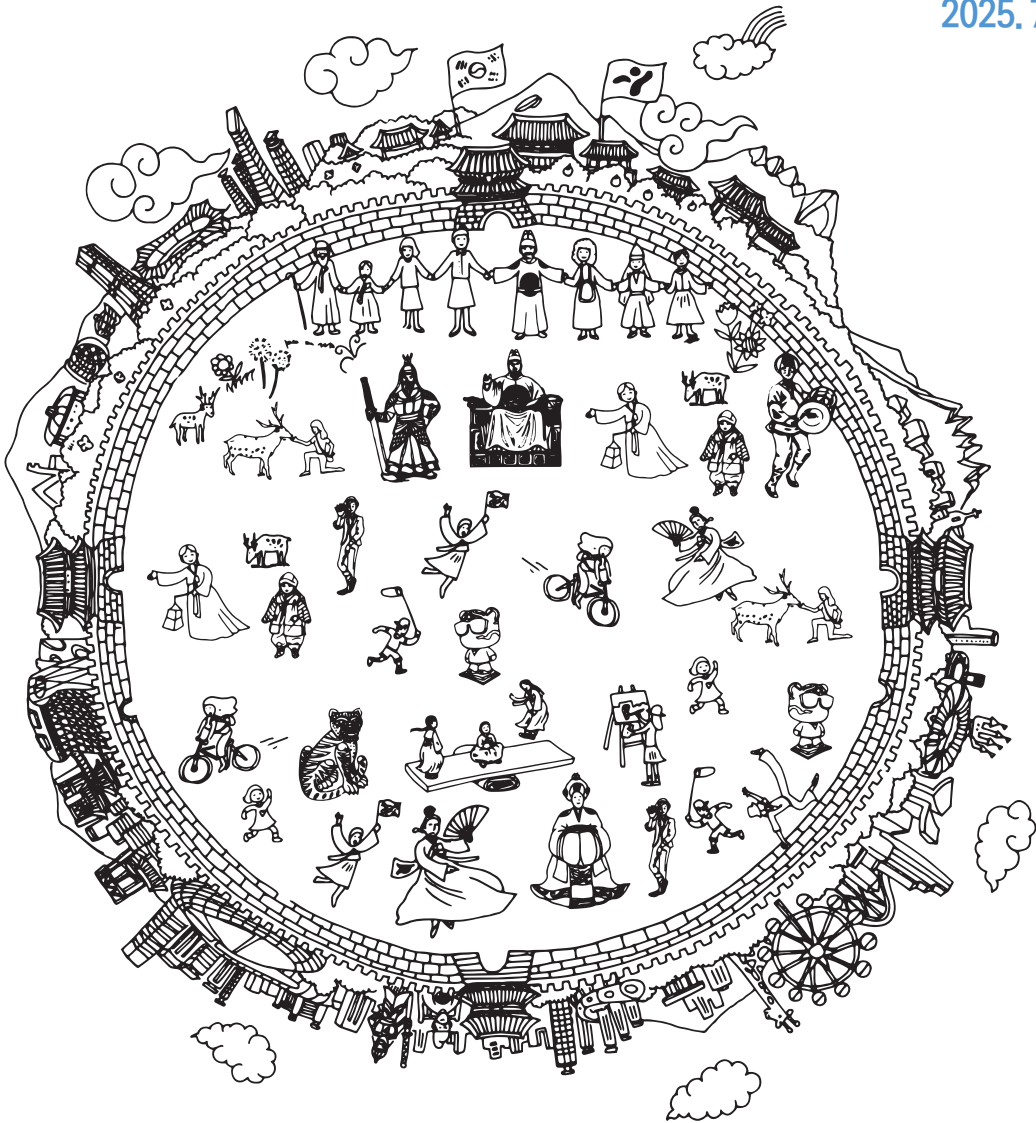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76호(그2)
2025. 7. 4.(금)



목 차

◆ 서울특별시의회

[예 규]

제177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	2
---	---

서울특별시의회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77호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‘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인

2025년 7월 4일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법제담당관” 을 “법제과” 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재정분석담당관” 을 “재정분석과” 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현장민원담당관” 을 “현장민원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② <u>법제담당관</u> 입법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	② <u>법제과</u> ----- ----- -----.
③ <u>재정분석담당관</u> 예산 및 재정분석 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예산 분석관으로, 비용추계 및 세제분석 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추계 분석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	③ <u>재정분석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<u>현장민원담당관</u> 민원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민원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	④ <u>현장민원과</u> ----- ----- -----.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시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개정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(부서명 정비) 조직개편 사항(' 25. 7. 4.字)을 반영하여 부서명 정비(안 제3조제2항, 제3항, 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
(인사혁신처 예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없음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